

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1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 /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폐지이유

- 1999. 12. 31.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,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88호(2009. 01 .30 ~ 2009. 02 .20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의료보험법 (법률 제5854호 1999.2.8폐지, 2000.1.1시행)
- 국민건강보험법 (법률 제5854호 1999.2.8제정, 2000.1.1시행)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

고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고성군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